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11. 21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. 10. 10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8. 10. 13
- 다. 상정일자 : 제1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위원회(2008. 11. 21)
상정, 심사,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강창수 교통지도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주차장법」 제4조 에 따라 주거지역 중 주차난 심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·관리함에 있어 주차관리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주차문제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·관리 요건, 대상 및 절차를 신설
(안 제1조의2)
-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내역 및 사업예산 우선지원 근거 신설
(안 제1조의3)
-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절차 신설(안 제1조의4)

다. 개정근거

- 「주차장법」 제4조 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)
- 「주차장법」 제4조의2 (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·관리계획)

- 「주차장법」 제4조의3 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의 해제)
-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-7700(2008. 5.30)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·운영계획통보

3. 검토보고 요지 (신승관 전문위원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·관리함으로써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임.
- 본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와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신설하려는 것으로, 안 제1조의2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·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하려는 것으로 주차장 확보율 70%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안 제1조의3에서는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사업들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1조의4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 하였음.
- 본 개정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에 주차장 확보율이 70%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예산을 우선 지원,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려는 내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되고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참고로 서울시 조례에는 50%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는 50% 미만인 지역이 2곳으로 염리동 아현동 일부지역과 공덕동(구 아현동) 일부 지역 등 2곳이나 이 두 지역은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이므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으며, 70%이하인 6개 지역 중 2개 지역은 재건축 및 뉴타운 지역으로서 우리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지역은 4개 지역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 타 : 없음